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23-20호

「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7월 20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조례안 예고

1. 제안이유

- 가.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이용료를 일부 경감하여, 이용자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함
- 나. 이용요금이 면제되는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,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
- 다. 이용시설 일부 명칭을 현행화하여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 개정내용

- 가. 이용시설 일부 명칭 현행화(안 제 3조 안 제7조 1호)
 - 일시보육실 → 시간제보육실

- 나. 이용료등의 면제(안 제 11조 1항 7호): 다자녀의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변경
 - ※ 현재 개인회원 연회비 2만원

다. 이용시설 신청 기간 일부 변경 (안 제13조 제1항, 제 15조 제1항 2호)

- 다목적교육실, 다목적강당: **이용일 7일전**에서 **이용일**로 변경
- 장난감도서관: **전 달 셋째 주 월요일부터 이용일 7일전까지**에서 **전 달 1일부터 이용일 전까지**로 변경

라. 조례 별표 일부 수정 및 이용료 감경

- 안 [별표1]

구분	단위		이용료
가. 다목적교육실	2시간 (기존 1시간)		10,000원
나. 다목적강당	2시간 (기존 1시간)		20,000원 (기존 30,000원)
다. 냉 · 난방비	다목적강당	1시간	10,000원 (기존 20,000원)
사. 무대조명	1시간		10,000원 (기존 20,000원)
아. 빔프로젝터	1회		10,000원 (기존 15,000원)

- 안 [별표3]

구분		이용시간	이용회원	이용정원
장난감 도서관	장난감 대여실	10:00~17:00	기관 및 개인회원	-
	도서실	10:30~11:30	기관회원	영유아 20명
		13:30~15:00	개인회원	영유아 7명
		15:30~17:00		
체험놀이실		10:00~11:30	기관회원	영유아 20명
		13:30~15:00	개인회원	영유아 7명
		15:30~17:00		

이용시간 및 정원 일부변경, 장난감도서관의 명칭 세분화 (장난감대여실과
도서실로 구분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7월 26일까지 상주시의회 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제·개정 (안)	수 정 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- 1) 전자우편: argentina111@korea.kr
- 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- 3) 팩 스: 054-535-9854 (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(전화: 054-537-7845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(<https://www.sangjucouncil.go.kr> → 의회소식 → 공지사항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: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견	비고